

#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30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01. 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안산시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문화원사를 건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향토문화 창달을 실현하려는 것임.

## 주요골자

- 가. 문화원사에는 향토사료실, 교육실 등을 설치하도록 함 (안 제3조).
- 나. 문화원사에서는 향토문화 자료의 보존·전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(안 제4조).
- 다. 문화원사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(안 제6조).
- 라. 문화원사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).

## 제정조례안 : 별첨

##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##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#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**제1조 (목적)** 이 조례는 안산시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문화원사(이하 “문화원사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위치)** 문화원사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1586-1번지에 둔다.

**제3조 (시설)**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한다.

1. 업무시설(사무실, 문화원장실, 강사대기실, 사학연구실 등)
2. 향토사료실(전시실, 수장고 등)
3. 교육실(문화교실, 공연실, 자료실, 연습실 등)
4. 지원시설(기계실, 전기실 등)
5. 기타 야외시설(전통초가, 민속공연 시설)

**제4조 (사업)** 문화원사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향토사료의 조사 및 연구
2. 향토문화 자료의 구입, 보존 및 전시
3. 향토문화와 관련한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
4. 향토문화와 관련한 간행물의 제작·배포 및 교육
5. 기타 향토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업

**제5조 (시설의 개방)** 문화원사의 시설물 및 각종 자료는 문화원사의 설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모든 주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6조 (자문위원회)** ①문화원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자료(유물)의 구입 및 보존·관리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안산시문화원사 운영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향토문화 관련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 기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7조 (위탁관리)** ① 시장은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(단체) 또는 일정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문화원사 관리·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문화원사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 위탁(계약)기간은 3년으로 하되, 연장할 수 있다.

**제8조 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소관 실·과		문화체육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문화체육과장 권 혁 수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문화 담당 여 환 규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경희 (행정 2798)